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2조의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시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제1항을 같은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은 각각 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연도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국·본부장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여론조사의 대외신뢰도 향상 및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정여론조사"라 함은 시의 각종 시책의 수립,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상의 여론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시민 및 공무원 등의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통상의 여론조사기법"이라 함은 공중의 의견을 파악함에 있어 정확성·과학성이 여론조사 전문가 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본추출·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방법 등을 총칭한다.
3. "조사설계"라 함은 통상의 여론조사기법에 의한 표본의 추출, 조사방법, 설문내용, 분석방법 등 여론조사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계획을 말한다.
4. "주제"라 함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중심내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
2. 기타 위원장이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안건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보관
2. 조사방법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론조사 또는 도시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보관

3.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의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제3조제1호에 의한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초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시정여론조사주제소위원회) ①시정여론조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여론조사주제소위원회(이하 "주제소위"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여론조사 주제의 발굴·조정(세분·통합, 조사시기 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여론조사 주제의 적합·타당성
3. 시정여론조사 결과의 시책반영에 관한 사항
4. 시정여론조사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 가. 시가 직접 시행
 - 나. 시가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 다. 시가 민간 전문조사기관 등과 합동으로 시행

②주제소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종합·조정하여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6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주제소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관으로 한다.

⑤회의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여론조사심의회의에 제출할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을 사전에 심의한다.

제 8 조(시정여론조사방법소위원회) ①주제소위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 또는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주제소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위원장이 승인한 주제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여론조사방법소위원회(이하 "조사방법소위"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여론조사설계의 적합·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시정여론조사 결과분석의 적합·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모니터 등 타 조사방법과의 상호 보완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정여론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②조사방법소위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조사방법소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의는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매분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심의절차) ①다음 연도에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국·본부장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시정여론조사에 대하여 주제소위에 상정·심의하고, 그 결과 시정여론조사의 주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방법소위에 상정,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제소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방법소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 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28
------	-----

1998. 12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11월 16일

다. 상정일자

제16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1998년 12월 18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탁병오)

가. 제안이유

노인종합복지관 5개소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위탁근거 마련
(안 별표1·별표2)

(1)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소재: 중랑구 면목동 178-8 외 1
규모: 대지 1,493㎡ 건물 2,371㎡

(2)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소재: 성북구 종암동 66-25 외 4
규모: 대지 1,088㎡ 건물 2,595㎡

(3)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 소재: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외 8
규모: 대지 12,099㎡ 건물 2,636㎡

(4)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 소재: 강서구 등촌동 661-4,
규모: 대지 1,142㎡ 건물 2,532㎡

(5)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소재: 마포구 창천동 140,
규모: 대지 1,286㎡ 건물 2,530㎡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
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생략)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동수)

○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별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공공시설에 대
한 설치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단일 조
례로 통합 규정 일원화하여 '98.7.1부터 시
행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토지취득을 시유재산관리
계획에 계상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건
립하고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5개소(중
랑, 성북, 은평, 강서, 마포)를 본 조례 제3
조(명칭 및 위치) 및 제4조(운영의 위탁)
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서울특별시립공공시
설), 별표 2(위탁사무)에 공공시설로 추가
하여 위탁사무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서
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직제규칙 개정('98.8.12)에 따라 공공시설과
위탁사무의 주관국(과)을 변경하려는 것으
로 이는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답변: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8명 전
원일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